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·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19. 7. 24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9년 3월 14일

나. 발 의 자 : 오현숙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 : 2019년 3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제2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의(2019. 3. 22.) 상정하여 “보류” 의결

마. 재상정일자 :

제2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사회건설위원회(2019. 7. 22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오현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영등포구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노인과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여 노인과 임산부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우선주차구역 설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- 차량의 이동 조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이정옥)

- 본 조례안은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·임산부 운전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임.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
  - 안 제3조에서는 노인·임산부 주차우선구역 설치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  -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를 구청장이 설치·관리하는 청사 및 공공시설로 규정하였으며,
  -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과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고,
  - 안 제8조에서는 위반 차량의 이동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현재 장애인에게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, 노인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.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노인·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노인·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회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 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주차장별 규모, 운영현황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·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·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오현숙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0
----------	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일

발의자 : 오현숙 의원 외 3명

## 1. 제안이유

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영등포구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노인과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여 노인과 임산부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우선주차구역 설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및 제7조)

### 3. 조례안 : “별첨”

#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 :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예산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(2019. 3. 11. ~ 3. 15.)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·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·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인”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2. “임산부”란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.
3. “노인 및 임산부 우선주차구역”이란 노인 및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.
4. “노인 및 임산부 운전차량”이란 노인 및 임산부가 직접 운전을 하는 차량을 말한다.

**제3조(구청장의 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·임산부 보호 및 사회·경제·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노인 및 임산부 우선주차구역(이하 “우선주차구역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백화점, 대형마트, 병원, 은행 등 노인 및 임산부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다른 법규와의 관계)** 우선주차구역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5조(적용범위)** 구청장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
2.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지정한 시설

**제6조(우선주차구역 설치 등)**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노인 및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·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.

**제7조(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)**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바닥면 또는 주차장 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.

**제8조(차량의 이동 조치)** 구청장과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노인 및 임산부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